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63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 의 자 : 조계원 · 주철현 · 김문수
이재관 · 신정훈 · 김남근
김우영 · 양부남 · 양문석
문금주 · 박수현 · 장종태
김승원 · 강준현 · 허성무
최혁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 역시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할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현행법은 선수와의 계약에 한정하여 표준계약서의 개발·보급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체육지도자에 대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가 없어,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대다수의 기관 및 단체는 체육지도자와 계약 시 계약해지 사유로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명시

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해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체육지도자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상 계약 해지사유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직장 체육 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선수가”를 “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이하 “직장운동경기부선수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장운동경기부선수과”를 “직장운동경기부선수등과”로, “사항 등”을 “사항, 계약 해지 사유(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반드시 포함한다)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우대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직장운동경기부선수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u>선수</u> 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① ----- ----- ----- ----- <u>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이하 “직장운동경기부선수등”이라 한다)이</u> ----- -----.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u>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u>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u>사항 등</u>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 <u>직장운동경기부선수등과</u> ----- ----- ----- <u>사항, 계약 해지 사유(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반드시 포함한다) 등</u> ---.
③·④ (생략) <u><신설></u>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u>

<u><신 설></u> <u>⑤</u> (생 략)	<u>을 우대할 수 있다.</u> <u>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직장운동경기부선수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u>⑦</u> (현행 제5항과 같음)
---	--